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396

발의연월일: 2022. 4. 26.

발 의 자: 김수흥 · 김경만 · 김교흥

박성준 • 서영석 • 소병철

안규백 • 전용기 • 정일영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여성 및 청년의 창업 등 농촌융복합산업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여성이거나 청년 인 경우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.

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 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제9호 및 제29조의2).

법률 제 호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9호 중 "소규모"를 "소규모, 여성 및 청년"으로 한다.

제29조의2의 제목 중 "우선지원"을 "등 우선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중 "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"로 하며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
- 2.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	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소규모</u> 농촌융복합산업 사업	9. <u>소규모, 여성 및 청년</u>
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	
사항	
10.・11. (생 략)	10.・11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2(소규모 농촌융복합산	제29조의2(소규모 농촌융복합산
업 사업자 <u>우선지원</u>) 농림축산	업 사업자 <u>등 우선지원</u>)
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	
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	
업 또는 홍보·교육사업 등을	
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	<u>다음 각 호의</u>
<u>복합산업 사업자</u> 를 우대할 수	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u>
있다.	
<u><신 설></u>	1.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
	<u>자</u>
<u><신 설></u>	2.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
	<u>합산업 사업자</u>